

의안 번호	990	【울산광역시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 일자 : 2013. 06. 04.(화)
- 나. 제출 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3. 06. 05.(수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3. 06. 14.(금)

2. 제안이유

울산광역시중구 공공도서관의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에 따라 대표 도서관의 설립 근거, 그 밖의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운영체계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적용범위 규정(안 제1조 ~ 제3조)
- 나. 대표도서관의 설치 근거 및 기능·조직 규정(안 제4조 ~ 제6조)
- 다.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출석위원 수당 지급 규정(안 제7조 ~ 12조)
- 라. 도서관 운영·관리 및 위탁운영 규정(안 제13조 ~ 30조)

4. 관련법령

- 가. 「도서관법」 제2조, 제27조, 제28조 및 제30조
- 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는 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들을 체계

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기대되나 기존 운영하고 있는 울산광역시교육청산하 중부 도서관과의 역할분담 차별화 등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 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.